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길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공정을 60%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비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음을 인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공정을 60%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후 해당 계약의 변경·취소가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4.18.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 정보 (분양문의) 1533-3789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의왕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4.1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의왕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4.18.(금)	2025.04.28.(월)	2025.04.29.(화)	2025.04.30.(수)	2025.05.09.(금)	2025.05.12.(월)~05.18.(일)	2025.05.20.(화)~05.26.(월)

1 공통 유의사항

-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에 대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은 민간 사전청약 방식으로 2022.02.28. 사전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선정한 후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이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4.18.입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었던 건설호수, 주택공급가격, 건축규모, 세대평면, 입주예정일 등은 현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의왕시)의 거주기간(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8.)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자격이 취소되고 부적격 처리됩니다. (본청약자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금번 본청약 공고에 별도 청약신청은 필요없으며,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동·호수 배정 후 동·호수가 결정됩니다.

- 동·호 배정 결과 확인방법 : 청약홈 > 민간사전청약 > 당첨조회(당첨자발표일부터 10일간)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동·호수 결정 이후 자격검증(주택소유, 전입 제한기간 충족 등) 절차를 거쳐 공급계약 체결이 진행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2.02.28.)부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8.)까지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자 자격이 취소되고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상속을 받아 주택 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예외)
- 사전당첨자의 경우 소형·저가주택 등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2.02.28.) 기준에 따릅니다.**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당첨자발표일(2025.05.09.)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청약신청 제한 등 당첨유형에 따라 본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금회 공급세대는 지난 사전공급계약 이후 미계약, 사전당첨 지위 포기 및 부적격 사전당첨자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c-jeil.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위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4.18.(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왕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며,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입니다.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의왕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4.04.1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4.28.(월)	2025.04.29.(화)	2025.04.30.(수)	2025.05.09.(금)	2025.05.12.(월)~05.18.(일)	2025.05.20.(화)~05.26.(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892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 및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공급(분양)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6억 이상 주택형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법인 주택 거래 계약서를 의무 제출하여야함)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5.05.09.)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 거주 의무기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분양가격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의왕시 건축과 - 9953 (2025.04.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공공주택지구 B-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8개동 총 900세대 중 사전 공급 434세대, 금회 공급 466세대(특별공급 301세대, 일반공급 1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01세대(기관추천 46세대, 다자녀가구 46세대, 신혼부부 107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88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6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사전당첨자 배정세대수	본청약 배정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129	01	084.2210A	84A	84.2210	25.1561	109.3771	54.6597	164.0368	58.3738	584	287	297	30	30	68	9	57	194	103	27
	02	084.2089B	84B	84.2089	26.8089	111.0178	54.6520	165.6698	58.3655	138	56	82	8	8	19	2	15	52	30	7
	03	084.2042C	84C	84.2042	26.2332	110.4374	54.6489	165.0863	58.3623	178	91	87	8	8	20	3	16	55	32	8
	합 계									900	434	466	46	46	107	14	88	301	165	42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세대당 대지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공동현관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본 공고의 내용 중 약식표기로 표현된 내용이 있으니 주택형과 약식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사전청약 / 신청기준)	084.2210A	084.2033B	084.2042C
주택형 (본청약 / 실제 전용면적기준)	084.2210A	084.2089B	084.2042C
건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84A	84B	84C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청약홈 주택형은 사전청약 기준(084.2210A / 084.2033B / 084.2042C) 으로 보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4	1	1	6	
	장기복무 제대군인	4	1	1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1	1	6	
	중소기업 근로자	4	1	1	6	
	장애인	경기도	5	2	2	9
		서울특별시	5	1	1	7
		인천광역시	4	1	1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의왕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15	4	4	23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15	4	4	23	
신혼부부 특별공급		68	19	20	10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	2	3	14	
생애최초 특별공급		57	15	16	88	
합 계		194	52	55	30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 라인별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합계	1회(10%)	2회(10%)	1회(30%)	2회(30%)	입주지정일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5.07.15.	2025.09.15.	
84A	584	103동 2,3호 104동 1,2호	1층	3	348,817,000	290,983,000	639,800,000	63,980,000	63,980,000	191,940,000	191,940,000	127,960,000
			2층	4	348,817,000	312,883,000	661,700,000	66,170,000	66,170,000	198,510,000	198,510,000	132,340,000
			3층	4	348,817,000	327,383,000	676,200,000	67,620,000	67,620,000	202,860,000	202,860,000	135,240,000
			4층	4	348,817,000	341,983,000	690,800,000	69,080,000	69,080,000	207,240,000	207,240,000	138,160,000
			기준층	84	348,817,000	378,383,000	727,200,000	72,720,000	72,720,000	218,160,000	218,160,000	145,440,000
		103동 6호 104동 3,5호	1층	2	348,817,000	300,683,000	649,500,000	64,950,000	64,950,000	194,850,000	194,850,000	129,900,000
			2층(104동5호)	1	348,817,000	312,783,000	661,600,000	66,160,000	66,160,000	198,480,000	198,480,000	132,320,000
			2층	2	348,817,000	322,883,000	671,700,000	67,170,000	67,170,000	201,510,000	201,510,000	134,340,000
			3층	3	348,817,000	337,683,000	686,500,000	68,650,000	68,650,000	205,950,000	205,950,000	137,300,000
			4층	3	348,817,000	352,383,000	701,200,000	70,120,000	70,120,000	210,360,000	210,360,000	140,240,000
		101,2동 2,3호 105동 1,3,5,6호 106,8동 2,5,6호 107동 1,2,5,6호	기준층	63	348,817,000	389,383,000	738,200,000	73,820,000	73,820,000	221,460,000	221,460,000	147,640,000
			1층	10	348,817,000	293,683,000	642,500,000	64,250,000	64,250,000	192,750,000	192,750,000	128,500,000
			2층(105동3호, 108동2호)	2	348,817,000	305,583,000	654,400,000	65,440,000	65,440,000	196,320,000	196,320,000	130,880,000
			2층	16	348,817,000	315,583,000	664,400,000	66,440,000	66,440,000	199,320,000	199,320,000	132,880,000
			3층	18	348,817,000	330,183,000	679,000,000	67,900,000	67,900,000	203,700,000	203,700,000	135,800,000
		101,2동 6호	4층	18	348,817,000	344,783,000	693,600,000	69,360,000	69,360,000	208,080,000	208,080,000	138,720,000
			기준층	309	348,817,000	381,383,000	730,200,000	73,020,000	73,020,000	219,060,000	219,060,000	146,040,000
			1층(101동6호)	1	348,817,000	293,483,000	642,300,000	64,230,000	64,230,000	192,690,000	192,690,000	128,460,000
			1층	1	348,817,000	303,283,000	652,100,000	65,210,000	65,210,000	195,630,000	195,630,000	130,420,000
			2층(101동6호)	1	348,817,000	315,483,000	664,300,000	66,430,000	66,430,000	199,290,000	199,290,000	132,860,000
		103동 5호	2층	1	348,817,000	325,583,000	674,400,000	67,440,000	67,440,000	202,320,000	202,320,000	134,880,000
			3층	2	348,817,000	340,483,000	689,300,000	68,930,000	68,930,000	206,790,000	206,790,000	137,860,000
			4층	2	348,817,000	355,283,000	704,100,000	70,410,000	70,410,000	211,230,000	211,230,000	140,820,000
			기준층	30	348,817,000	392,383,000	741,200,000	74,120,000	74,120,000	222,360,000	222,360,000	148,240,000
			1층	1	348,767,000	300,933,000	649,700,000	64,970,000	64,970,000	194,910,000	194,910,000	129,940,000
			2층	1	348,767,000	323,133,000	671,900,000	67,190,000	67,190,000	201,570,000	201,570,000	134,380,000
			3층	1	348,767,000	337,933,000	686,700,000	68,670,000	68,670,000	206,010,000	206,010,000	137,340,000
			4층	1	348,767,000	352,733,000	701,500,000	70,150,000	70,150,000	210,450,000	210,450,000	140,300,000
84B	138	103동 5호	기준층	21	348,767,000	389,633,000	738,400,000	73,840,000	73,840,000	221,520,000	221,520,000	147,680,000
			1층(105동2호, 108동3호)	2	348,767,000	293,733,000	642,500,000	64,250,000	64,250,000	192,750,000	192,750,000	128,500,000
			1층	3	348,767,000	303,533,000	652,300,000	65,230,000	65,230,000	195,690,000	195,690,000	130,460,000
			2층(101동5호,105 동2호,108동3호)	3	348,767,000	315,733,000	664,500,000	66,450,000	66,450,000	199,350,000	199,350,000	132,900,000
			2층	3	348,767,000	325,833,000	674,600,000	67,460,000	67,460,000	202,380,000	202,380,000	134,920,000
		101,2동 5호 105동 2호 106,7,8동 3호	3층	6	348,767,000	340,733,000	689,500,000	68,950,000	68,950,000	206,850,000	206,850,000	137,900,000
			4층	6	348,767,000	355,533,000	704,300,000	70,430,000	70,430,000	211,290,000	211,290,000	140,860,000
			기준층	90	348,767,000	392,633,000	741,400,000	74,140,000	74,140,000	222,420,000	222,420,000	148,280,000

84C	178	103동 1호	1층	1	348,749,000	271,551,000	620,300,000	62,030,000	62,030,000	186,090,000	186,090,000	124,060,000
			2층	1	348,749,000	292,751,000	641,500,000	64,150,000	64,150,000	192,450,000	192,450,000	128,300,000
			3층	1	348,749,000	306,851,000	655,600,000	65,560,000	65,560,000	196,680,000	196,680,000	131,120,000
			4층	1	348,749,000	321,051,000	669,800,000	66,980,000	66,980,000	200,940,000	200,940,000	133,960,000
			기준층	21	348,749,000	356,351,000	705,100,000	70,510,000	70,510,000	211,530,000	211,530,000	141,020,000
		101,2동 1호 106,8동 1,7호 107동 7호	1층	6	348,749,000	274,251,000	623,000,000	62,300,000	62,300,000	186,900,000	186,900,000	124,600,000
			2층(108동1호)	1	348,749,000	285,851,000	634,600,000	63,460,000	63,460,000	190,380,000	190,380,000	126,920,000
			2층	6	348,749,000	295,551,000	644,300,000	64,430,000	64,430,000	193,290,000	193,290,000	128,860,000
			3층	7	348,749,000	309,651,000	658,400,000	65,840,000	65,840,000	197,520,000	197,520,000	131,680,000
			4층	7	348,749,000	323,851,000	672,600,000	67,260,000	67,260,000	201,780,000	201,780,000	134,520,000
		기준층	126	348,749,000	359,351,000	708,100,000	70,810,000	70,810,000	212,430,000	212,430,000	141,620,000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정률 60%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지 않으며, 아파트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고, 현장 공정상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발코니 확장 여부는 선택이 불가하며, 필수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선택 후 확장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전당첨자와 본청약자의 분양조건외 차이(계약금 비율 및 유상옵션 항목 등)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분양가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고,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확장은 필수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청약 및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단지 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당첨자 효력 상실, 그에 따른 공급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조건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로 납부 시 주말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 주택형은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c-jeil.co.kr)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의거, 주택 구입 비용(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 등)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p style="text-align: center;">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p> <p style="text-align: center;">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모두 부적격 처리</p>
무주택요건	<p>■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불가합니다.</p>	
	<p>■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3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야 합니다.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 (의왕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의왕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는 우선 공급 낙첨자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에게 공급함.
- 우선공급(50%)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의왕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우선공급(50%)에서 낙첨된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때에 지역 우선공급은 적용되지 않음(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가-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0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의왕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왕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의왕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비고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4.18.(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왕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의왕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가점항목</th> <th style="width: 10%;">가점상한</th> <th style="width: 15%;">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15%;">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8">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6">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6">17</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p>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p>-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비고	<p>■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p> <p>-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p> <p>■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8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p> <p>-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p> <p>※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p>■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p> <p>-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p> <p>-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p> <p>*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p> <p>*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1인 가구 단독세대'는 60㎡이하 주택형에만 청약이 가능하여 당 사업지는 청약 불가)</p> <p>*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p> <p>■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p> <p>*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p> <p>**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p> <p>■ ①소득구분</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왕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의왕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p>							
비고	<p>■ 자녀기준</p> <p>-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p> <p>*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p> <p>*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p> <p>*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p>						
	<p>■ 소득기준</p> <p>- 소득 확인 시점</p>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4.18.(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p>-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p>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160% 초과하나,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충족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315 738 2125 978"> <thead> <tr> <th data-bbox="315 738 763 790">구분</th> <th data-bbox="763 738 1218 790">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h data-bbox="1218 738 1673 790">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data-bbox="1673 738 2125 790">그 밖의 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15 790 763 841">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763 790 1218 841">200만원</td> <td data-bbox="1218 790 1673 841">300만원</td> <td data-bbox="1673 790 2125 841">250만원</td> </tr> <tr> <td data-bbox="315 841 763 892">전용면적 102㎡ 이하</td> <td data-bbox="763 841 1218 892">300만원</td> <td data-bbox="1218 841 1673 892">600만원</td> <td data-bbox="1673 841 2125 892">400만원</td> </tr> <tr> <td data-bbox="315 892 763 943">전용면적 135㎡ 이하</td> <td data-bbox="763 892 1218 943">400만원</td> <td data-bbox="1218 892 1673 943">1,000만원</td> <td data-bbox="1673 892 2125 943">700만원</td> </tr> <tr> <td data-bbox="315 943 763 978">모든면적</td> <td data-bbox="763 943 1218 978">500만원</td> <td data-bbox="1218 943 1673 978">1,500만원</td> <td data-bbox="1673 943 2125 978">1,0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왕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의왕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data-bbox="315 1353 2125 1453"> <thead> <tr> <th data-bbox="315 1353 920 1404">구분</th> <th data-bbox="920 1353 1525 1404">가점제</th> <th data-bbox="1525 1353 2125 1404">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15 1404 920 1453">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 data-bbox="920 1404 1525 1453">70%</td> <td data-bbox="1525 1404 2125 1453">30%</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0%	3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0%	3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구 분	일 정		방 법	장 소
특별공급 청약신청	2025.04.28.(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건본주택 (10:00~14:00)	•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건본주택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건본주택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892번지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2025.04.29.(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 청약통장 가입 은행 창구
일반공급 2순위 청약신청	2025.04.30.(수)	09:00~17:30		
당첨자 발표	2025.05.09.(금)	-	• 청약당첨조회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p>본인 신청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p>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data-bbox="389 821 2134 1165"> <thead> <tr> <th data-bbox="389 821 1258 853">인감증명 방식</th> <th data-bbox="1258 821 2134 853">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89 853 1258 1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data-bbox="1258 853 2134 1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마이데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	--

('청약도움e') 서비스	<p>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5.09.(금) ~ 2025.05.18.(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5.09.(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p>■ 서류제출 일정 및 자격검수 유의사항</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 서류 일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p>			
구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대상자	접수장소
내용	2025.05.12.(월) ~ 2025.05.18.(일), 7일간 / 10:00 ~ 16:00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건본주택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892번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8.)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건본주택을 방문,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할 때에는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가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는 예비순번 순 등으로 서류접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공급(추첨) 방법 등은 홈페이지(<https://www.gc-jeil.c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본인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인터넷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임신확인서 불가 •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 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임신확인서 불가 •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견본주택 비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건본주택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내용 확인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건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자격 요건 확인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으로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임신확인서 불가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		청약 가점내용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 청약홈 : 청약홈>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청약통장 가입확인용>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창구 방문>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 청약홈 : 청약홈>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적격		○	주택 및 분양권 등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의심세대			소유여부 증명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자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근무(단신부임) 증명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대리인 추가서류		○	위임장	당첨자	• 건물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본인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인터넷 발급용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매월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해당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해당자격		소득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또는 해당 직장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①~⑤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여부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 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 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해당자격	자산 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있는 경우	(소유증빙)	②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전체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www.iros.go.kr) ② 위택스(www.wetax.go.kr) ③ 행정복지센터
	필수 (자산가액 증빙)	① 소유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② 소유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③ 소유부동산이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 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이택스(etax.seoul.go.kr) ③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 축산업 허가증,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 중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②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전국자치단체)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시군구청(또는 위택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신청자 본인)

구분	확인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팩스불가)	①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 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및 없는 경우)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③, ④ 해당직장

※ 상기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입증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 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일반공급/특별공급)	2025.05.20.(화) ~ 2025.05.26.(월), 7일간 (10:00 ~ 16:00)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견본주택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892번지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확인 서류 일체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개별 통지)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 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견본주택 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견본주택 내 비치 ※ 6억원 이상 주택형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계약 시 의무 작성
대리계약 시 추가 사항		○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인터넷 발급용 불가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름)

대상증서	1.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2.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 도급 증서(계약서 1통마다 납부)
------	--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 별도 납부					
납부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납부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금액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하게 연대하여 납부하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 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 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에 의한 '도급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며 계약체결 시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504-470734	주택도시보증공사동부PF금융센터

- ※ 분양대금(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201호 홍길동: 10102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분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 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②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부적격 ③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낙첨(신청 이력) = 부적격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권은 무효 처리됨.
 - 부부의 세대원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산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 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청약당첨자 소형·저가 주택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 특별공급 미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사전청약당첨자 미적용)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전청약당첨자 미적용)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 및 건본주택은 대출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사업주체가 대출금융기관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대출이자만 해당됨), 입주 시 사업주체가 대납했던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에게 일시 납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후불제 적용 불가)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용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

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금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8-1 발코니 확장 계약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필수 선택 항목으로 확장 여부 선택 불가)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5.07.15.	입주지정일
84A	8,960,000	896,000	896,000	7,168,000
84B	9,760,000	976,000	976,000	7,808,000
84C	10,770,000	1,077,000	1,077,000	8,616,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804-466849	주택도시보증공사동부PF금융센터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확인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합니다.
(예시 101동 201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확장비의 중도금, 잔금 납부일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지정된 납부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본 아파트는 공정률 60%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됩니다. 공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발코니를 비확장형으로 선택하

실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시 이중창틀,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동일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8-2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택안	약식표기	설치개소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모델명 (제조사 : 삼성)		
					계약시	2025.07.15.	입주지정일	실명	실내기	실외기
일반형	84A, 84B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5,180,000	518,000	518,000	4,144,000	거실	AJ072MB1PBC1	AJ040MXHNBC1
								안방	AJ032MB1PBC1	
								침실1,2	AJ016MB1PBC2	
	84C	5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5,780,000	578,000	578,000	4,624,000	거실	AJ072MB1PBC1	AJ050MXHNBC1
								안방	AJ032MB1PBC1	
								침실1,2	AJ016MB1PBC2	
고급형 (공기청정형)	84A, 84B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5,780,000	578,000	578,000	4,624,000	거실	AJ072MB1PBC1	AJ040MXHNBC1
								안방	AJ032MB1PBC1	
								침실1,2	AJ016MB1PBC2	
	84C	5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6,530,000	653,000	653,000	5,224,000	거실	AJ072MB1PBC1	AJ050MXHNBC1
								안방	AJ032MB1PBC1	
								침실1,2	AJ016MB1PBC2	
								알파룸	AJ016MB1PBC2	

(2) 가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적용사항	모델명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5.07.15.	입주지정일	
주방	비스포크 [냉장고(1도어)+냉동고(1도어)+김치냉장고(1도어)] +시스템수납장 포함	RR40C79(8)95AP	84A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냉장고장 선택시 선택가능
		RZ34C79(8)65AP RQ34C79(8)45AP	84B, 84C	7,600,000	760,000	760,000	6,080,000	*냉장고장 선택시 선택가능

	원 스퀘어 후드 (파세코)	PHD-SQI450	전 타입	600,000	60,000	60,000	480,000	미선택 시 침니형 렌지후드 설치
	3구 인덕션 (린나이)	RBI-G3000N	전 타입	700,000	70,000	70,000	560,000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 설치
	전기오븐 (삼성)	NQ36A6555CK	전 타입	450,000	45,000	45,000	360,000	미선택 시 하부장 가구 설치
	식기세척기 (삼성)	DW80F71Y1SEW	전 타입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미선택 시 하부장 가구 설치
공용 욕실 (욕실1)	비데	IST-N42E	전 타입	150,000	15,000	15,000	120,000	미선택 시 일반 투피스형 양변기 설치

(3) 인테리어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적용사항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5.07.15.	입주지정일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84B, 84C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		
		스윙도어	84A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		
	현관 신발장	추가 신발장	84A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미선택 시 벽지 시공		
	현관 팬트리	시스템 선반 + 도어	84B, 84C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		
복도	벽체	복도 가구판넬	84A	700,000	70,000	70,000	560,000	미선택 시 벽지 시공		
			84C	600,000	60,000	60,000	480,000			
		현관/복도 가구판넬	84B	900,000	90,000	90,000	720,000			
거실+주방	우물천장	거실 라인조명 + 주방 라인보드	84A, 84C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 미선택 시 거실 천장에 기본형 거실조명 설치		
			84B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에 천장지 설치		
마루 및 타일	광폭강마루	바닥	광폭강마루 거실+주방+침실+복도+팬트리	84A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미선택 시 기본 강마루 설치	
				84B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84C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포세린타일	벽체	거실 아트월	전 타입	600,000	60,000	60,000	480,000		
복도 아트월			전 타입	500,000	50,000	50,000	400,000			
침실	침실1	불박이장	84A, 84B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미선택 시 벽지 시공		
								미선택 시 벽지 시공		
	침실2	불박이장	84C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미선택 시 벽지 시공		
								미선택 시 벽지 시공		
	안방	드레스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84A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	
				84B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	
				84C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	
			시스템 가구	파우더장	전타입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미선택 시 벽지 시공
					84A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
84B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	
84C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	

주방	아일랜드장	아일랜드장 (엔지니어드상판 + 팝업콘센트 포함)	84A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미선택 시 바닥마감 설치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벽체 미설치) (주방 상부장 간접 조명 포함)	84A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미선택 시 인조대리석 설치
			84B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84C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냉장고장	냉장고장 + 김치냉장고장 + 수납장	84A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가구판넬 포함
			84B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미선택 시 벽지 시공
			84C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가구판넬 포함
	팬트리	도어 + 시스템가구	84A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84B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84C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장식장	장식장	84B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미선택 시 벽지 시공	

(4)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804-466849	주택도시보증공사동부PF금융센터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확인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납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추가선택품목 선택품목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2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

(5)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공정률 60%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후 해당 계약의 변경·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및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 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 사양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색상, 패턴 및 기능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추가 선택품목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 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 시 개별 납부)
- 엔지니어드스톤, 타일 등 특성상 무늬,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등급 또는 등급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가전제품의 색상 및 모델은 건본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계약자의 취향에 따른 색상 및 모델사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공사비는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기타 가전제품의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천장에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84A, 84B 4개소, 84C 5개소) 및 벽체에 스탠드형/벽걸이형 냉매배관(거실/안방 2개소) 및 매립박스(거실/안방 2개소)가 모두 설치됩니다.
- 천장에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용 냉매배관의 분지관이 삼성제품으로 설치되며, 삼성 에어컨만 호환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는 시스템에어컨용 실외기로 추가 에어컨 설치 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 외 추가로 실외기실에 실외기 설치 시 냉방효율 저하,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하자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될 수 있으나, 본 공사에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론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건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 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는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그릴의 색상은 주동 색체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본 공사 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상이한 실외기 그릴 색상으로 시공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공통)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받을 수 있으나, **본 아파트는 공정률 60%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공정 진행상 마이너스 옵션 선택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9

단지 여건 등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고문에 미기재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에 따라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지를 방문하시어 주변 환경(현오시설 위치, 도로, 소음, 일조, 조망 등)을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급계약서와 입주자 모집공고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유의 사항 미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의 각종 인쇄물 상의 조감도, 투시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입면 디자인(저층부 석재, 줄눈, 도장 디자인, BI/CI, 상부층 장식 요소 등), 각종 시설물(조경, 창호, 필로티, 외부 계단, E/V 등), 동선 체계 등이 시행 주체 및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표시 방법은 m²으로 표기되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됩니다.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에 의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인쇄상 오류 및 오탐자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상 상충 부분이 있을 시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신청 전 반드시 현장여건, 주변 유해시설, 마감재리스트,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 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를 포함한 인근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 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정책, 현장여건 등에 따라 분양 홍보자료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은 입주 예정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중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성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좌우대칭 및 세대현관 출입구 방향이 상이)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거소요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의왕시 도로건설과 요청에 대한 의왕경찰서 협의 결과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문 의왕과천단지사업2팀-2551호(2024.05.28)'에 의거 차량의 안전한 주행성 및 시야 확보를 위하여 사업부지의 면적이 약 56.96m² 증가 될 예정이며, 해당 대지비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으로 안분하여 대지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업부지 준공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증가 면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대지지분 변경에 따른 대지비는 별도로 정산하지 아니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인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은 2025년 03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유수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국가기관과 지자체, 혹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기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부지면적, 대지 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 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이 최종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 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자연재해, 문화재 발견 및 정부의 정책에 의해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제시된 내용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 면적은 법적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특화 및 마감 계획은 인허가 및 시공 여건-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왕시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기본 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제시된 CG,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왕시 고천동 공공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왕시 고천동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의왕시 고천동 공공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및 국가기관으로서 본 사업부지가 속한 택지지구의 준공 예정시기는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이 지연 될 수 있어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왕시 고천동 공공택지개발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당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방음벽,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학교용지 등의 개설과 인접대지, 보행자도로, 연결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기타 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전면조망, 생활권 등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왕시 고천동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인근의 시설, 확장되는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향후 단지 서측의 초등학교 부지의 공사 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완공 후 학교 수업 및 종소리 등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내 학교시설 계획은 지구내 주택의 입주시기 및 세대수, 학생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의 학교 설립 계획 및 교육부 심사 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설립여부, 개교일정, 학생배치계획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학생 임시배치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학교 설립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에 임시 배정받아 통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관련 기관, 인허가청 및 사업주체에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여건 및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 초등학교 용지는 다른 용도의 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조권, 조망권 등의 제반 환경권의 침해 등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인허가청 및 사업주체에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부와 동측에 녹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의왕 고천동 공공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계획에 따라 보행로 및 진입로 등의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주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북측 150m 거리에 아스콘 공장(현창기업 등) 및 북측 500m 거리와 남서측 1.6km 거리에 레미콘 공장(쌍용레미콘, 성신양회)을 비롯한 다수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공장 및 공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악취, 대기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이전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 이후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사업주체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측 450m 거리에 사찰 및 납골당(오봉정사)이 있으며, 단지 남서측 200m에서 900m까지 거리에 사슴농장 및 다수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악취 등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신청 이전에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 500m 위치에 오봉산의 남북으로 고압 송전 철탁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권 침해 등의 불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이전에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 500m 위치에 왕복10차선 규모의 경수대로(1번국도)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동에서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일부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진동·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 시

		<p>혼잡 할 수 있으니 공급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근 상업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인해 일부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왕 고천동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기타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당첨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인접대지, 보행자도로, 연결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인접대지, 학교, 도로, 완충녹지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기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남측에 연접하여 상업용지, 근생용지,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업무시설용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예정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지구단위시행지침 기준 4층~7층의 건축물이 축조될 수 있고, 향후 인허가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시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차량 동선 등),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실외 주민운동시설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차로 및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 발전기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는 지형의 특성상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측(101동~103동 측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높이 10.5m 방음벽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의왕고천동 공공택지개발지구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충족을 위하여 방음벽의 높이 및 설치 위치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조망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학교 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고천2초등학교(가칭, 2026년 3월 개교목표)로 배치 예정이나 개교가 지연될 경우 개교 전까지 오전초등학교로 임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오전초등학교로 임시배치 될 경우 통학버스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임시배치없이 고천2초등학교로 정상 배치되는 경우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중학생은 의왕중학군(의왕중, 고천중, 모락중)내 배치 계획되어 있으며, 고등학생은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시)내 학생배치 예정입니다.
<p>단지 내·외부 유의사항</p>	<p>단지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 관련 홈페이지,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내부는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로 건축되며,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101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층 일부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102동과 103동 사이 키즈스테이션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되었으며, “이동통신중계장치”, “옥외안테나”의 설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으로 시공사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 지하1,2층 부출입구 인근 환풍 및 PIT와 주출입구 인근 환풍 및 PIT에 “이동통신중계장치”, 106~108동 지붕층에 기간통신사업자용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이고, 인접세대의 경우 해당 시설로 인한 소음, 전파발생, 빛반사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7동 옥탑지붕에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이고, 인접세대의 경우 해당시설로 인한 소음, 전파발생, 빛반사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상부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본 공사시 위치 변경 가능)이며 인접세대의 경우 해당 시설로 인한 소음, 전파발생, 빛반사, 눈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과 102동 사이, 104동 남측, 105동과 106동 사이 어린이놀이터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맹꽁이가 발생한 지역으로 보존 대책을 위하여 단지 내 수경시설(수생비오톱)이 설치되며, 입주 이후 해당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 발생, 해충, 개구리 등의 소음, 미관 저해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서측(공동주택 출입구 공용), 남측(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출입구 공용) 2개소 설치되어 이로 인한 차량통행으로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 비상차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비상차로 선형 및 경사도는 주변현황,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벽 및 옥상, 옥탑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와 단지계획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D/A 및 제연설비의 급기용 D/A는 본 시공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의 도로와의 레벨차로 인해 형태, 마감, 크기 등은 현황 레벨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구조물(설비 환기용 환기구, 천창, 제연설비 환기구 등이 주동에 접하거나 전면측면·배면 인근 및 필로티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본 공사 시 효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소음, 매연,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미술장식품 및 옥탑 사인물 등으로 인한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및 빛반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지하 및 동출입구, 문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벽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우천 시 세대 외부 장식물 마감부위에 우수가 떨어짐으로써 일부 인접한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단지와 근린생활시설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분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101동과 102동 사이 서측, 103동과 104동 사이 남측, 105동 서측, 106동 북측, 107동 서측, 108동 북측에 아파트 쓰레기분리수거장, 108동 남측과 근린생활시설 서측 사이에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마감은 (필로티, 하부 부대복리시설 포함) 석재(필로티내부 제외)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 및 옥탑의 디자인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성능개선, 안전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화문 손잡이의 시건장치 유무 및 디자인은 건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하며, 실외기 과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상 주의를 요합니다.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 옥탑 공간 등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 등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 하부 지하층에 제연휀름이 계획되어 있고, 1층 필로티 하부 및 주동에 인접하여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센터의 구획을 위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어 계약 시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CG에 따라 구획될 예정입니다. • 주동 하부에 실내골프연습장/피트니스 등 주민 운동시설, 저수조/기계실/발전기실/전기실등이 설치되어 음악/골프 타격음 등 진동, 소음, 매연 등의 영향이 있으며 지상에 D/A 등이 설치되며, 하부 실외기실 설치로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합니다. • 비상발전기 운전 시 운전 전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8동 인근 부대복리시설의 실내골프연습장 상부 좌우측에 위치한 인접세대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3동, 104동, 105동 인근 어린이집/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로, 저층세대 시야 간섭 및 시설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LG U+의 IoT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연장 사용 희망 단지에 한하여 유상 가입 가능 예정입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및 무인택배 등의 상태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IoT호환이 되는 스마트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습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 등) 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LG U+IoT와 호환되는 회사 및 모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별도로 구매하여야 연동이 가능합니다.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를 설치하여야 하고 (통신사 무관),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 U+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 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영상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주차장은 지상1층(서측출입구 2대), 지하 1~2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출입구는 단지 서측으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차량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차단기의 기능, 모양, 색상, 위치 등은 추후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구획까지의 동선거리, 주동 출입 방법 등이 다름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으며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의 불편함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 등 기타 장비의 주기적인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차량간 이동 동선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관, 배선 및 환 등의 설비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환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주차장 이용 시 급배기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구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용 그릴과 제연휀름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시공성 및 성능개선 향상 등의 이유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출입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별 주차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 1층 주차장에 배치하였습니다. • 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설비는 총 68대(급속 7면, 완속 18면, 이동형 콘센트 43면)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운영과 충전시설 이용 방해 등에 따른 민원 발생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비용(전기요금 등) 부과 및 운영방법 등은 입주예정자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물고임 또는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 바라며, 주차대수 및 주차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지하1층 각 동별 출입구 인근에 설치(총 19개소)될 예정이며 무인택배함까지의 접근 거리는 주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택배차량의 차량통행구간은 유효높이 2.7m(지하1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동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은 공동사용이며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및 배수 트랜치는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과 E/V홀,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 및 계단실은 대기환경 (온도차 등)의 영향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및 주차램프 통행로 유효높이는 2.7m(지하 1,2층 통행로),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이나, 일부구간은 설비로 인하여 2.7m에 못 미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장고는 일부 구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택배 차량은 지하1층 이용 가능)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근린 생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장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 동선으로 인해 세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지상에 8대(장애인 주차 포함, 전기차 충전시설 없음)의 주차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층 일부에는 실외기가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장비의 수증기, 소음, 분진, 진동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여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108동 인근 1층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 이용에 따라 냄새,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8동 남측과 근린생활시설 서측 사이에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층 바닥마감은 노출우레탄 방수 재질로 빛반사, 우천시 소음, 물 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지붕층이며 인접한 일부세대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후면 출입구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진행 될 수 있어 계약시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인접세대 소음, 냄새 등 생활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안목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건본주택에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 마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배치 상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와 벽체가 접하는 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체감지기는 1층, 2층, 최상층에 한하여 설치됩니다.(그외 기준층은 거실 1개소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크기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E/V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욕실 배관은 층하배관(하부층 상부배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적용위치 및 설비방식은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세대 유의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평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은 동파 등의 우려로 인하여 배수구가 미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한 응축수 및 우천 시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 주방 고정 가구장 하부 바닥은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상부장과 주방타일 사이는 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본주택은 미관상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 욕실 세대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됩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부분에는 어떠한 물품도 적재 및 보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물질적, 금전적인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 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실시공 시 세대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일부 해당세대는 배치상 축벽세대 또는 간벽세대의 외벽 단열재 시공 유무에 따라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의 가로 폭과 바닥면적 실외기실 창호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미확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는 소방 법규에 따라 쿡탑용 자동식소화기 및 관련 기기류가 렌지후드 덕트 내부에 설치되며 소화기 유지관리를 위해 덕트의 탈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욕실 직배기 시스템 적용으로 인해 인접세대에서 창문 개방 시 냄새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p>발코니, 창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유리, 창틀)의 사양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난간과 창호샷시, 유리의 사양 및 형태는 기능 또는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 시공 시 형태,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는 배수를 위한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우배수 이종관 등) 및 바닥 드레인인 천장 또는 벽에 노출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실시공 시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실 및 발코니는 비 단열 공간으로 세탁실 등에 설치된 수전, 배수관 등이 겨울철에 동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스스로 환기 등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 및 결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 구성 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피난 대피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가구 및 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욕실 거울, 욕조,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불박이장, 주방가구, 주방상부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건축마감재 시공(몰딩, 걸레받이 포함)이 되지 않거나 파지타일로 시공될 수 있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 하부장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거실 벽걸이 TV 설치 위치는 거실과 안방 사이 아트월(거실) 자리이며, 콘센트 배치 및 상부 합판보강은 시공하였으나, 경량벽 구간에 설치되므로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설치 기사와 충분히 상의 후 시공하시기 바라며, 맞은편 경량벽체는 합판시공이 되어 있지 않아, 벽걸이 TV 설치가 불가하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박이장(침실1) 및 화장대는 옵션으로 후시공 될 예정에 따른 걸레받이 및 도배마감이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 코킹마감) • 단위세대 내 타일,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ABS도어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천연자재(예: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후분양의 특성상 공정간 간섭으로 인하여 천정 몰딩과 가구 사이에 틈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에 먼지 등이 쌓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 자재의 특성상 실 시공 시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 자재의 특성상 실 시공 시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강화대리석, 인조대리석, 도배지, 시트지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주택법」 제54조 제7항에 의거 동법 동조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전기, 기계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가스배관은 주방 다용도실 내 노출형으로 시공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통해 인덕션을 설치한 세대의 경우에도 세대 내 가스배관은 일부 노출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 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 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장 하부에는 난방용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싱크대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가구가 설치되는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 또는 높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주방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되어 가구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장치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내부순환모드(공기청정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의 조명기구, 홈 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세대분전함의 경우 가구 및 창고 등 내부에 설치 불가함으로 복도, 침실, 거실 등 노출되는 부위에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출통의 위치 및 개수 등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홍보물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광고 홍보물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및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사인물, 홈페이지, 공급안내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를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공급안내, 홈페이지, 분양자료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제작 시점, 여건 변화 반영 정도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 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와 기기 등이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견본주택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은 84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인허가 도서,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창호 및 부속 철물류, 가구(시스템 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세대 난간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추가 선택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추가 선택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 및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추가 선택품목은 제조사, 형태 및 마감재(하드웨어, 색상, 재질 등)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타일 및 석재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불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D/A,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바닥 마감 패턴, 높이 및 마감,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및 단지 레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실제 시공 시 등급 혹은 등급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유도등 및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견본주택 자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 견본주택에 세대 내 설치된 전기기기 및 설비기는 실시공 시 제품 사양,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와 고층부(외벽의 리브 형태 및 지붕 모양 등) 및 부대 복리시설의 색상과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가스 배관, 후드 렌지, 환기 덕트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3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이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입주지정기간을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연체발생 시 연체료 포함)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맘&키즈라운지, 작은도서관, 독서실, 입주민카페,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피트니스, 다목적체육관, 근린생활시설 등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관리서비스의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되며,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 통로 2.7m, 그 외 통로 2.3m
- 주차장 출입구의 유효 높이 : 지하1층 2.7m

■ 내진 성능등급 표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동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내진능력(MMI 등급)
메르칼리 등급	VII-0.204(g)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제일동경재 외왕고천
 2. 신청자 : 외왕고천에프비이㈜
 3. 대지위치 : 경기도 외왕 고천 공공주택지구 B-2BL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소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 및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체개발 지양	-
3. 토양시 절상포함 최소화	-
4. 일조권 건설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온실가스 및 지구온난화 저감	★
10. 환경친화적 제품(단기)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인증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 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 접근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권시설의 접근성	★★★★
5. 건물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중앙·유지관리 공사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별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출퇴근시간 중합차량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주동기내화	★★★★
5. 복도 및 계단 유해대피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24.>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제일동경재 외왕고천	인증번호 : G-SEED-P-2022-1427-9
건축주 : 외왕고천에프비이㈜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공공(예정)일 : 2025년 1월 8일	유효기간 : 2022. 12. 23. ~
주소 : 경기도 외왕 고천 공공주택지구 B-2BL	사용승인일(사용경시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층 수 : 지하 2층, 지상 25층	인증등급 : 우수(2년2등급)
연면적 : 148,223.7639㎡	인증기간 : 녹색건축 인증기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건축물의 구분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설계자 : 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22년 12월 23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외왕 고천 공공주택지구 B-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22-주-에-11-0230
공공연도 : 20250108	평가자 : 단상민
주소 : 외왕 고천 공공주택지구 B-2BL	평가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층 수 : 지하2층 / 지상25층	평가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148223.7639(㎡)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허사 완료일
건축물의 구분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나산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량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에너지소비량 건축설계	100	1	48
에너지소비량	79.6		56
에너지소비량			64
에너지소비량			72
에너지소비량 건축설계			20.7

에너지 성능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8.3	49.3	38.4	8.5
급탕	30.7	35.9	26.4	5.9
조명	10.6	10.0	27.4	4.7
환기		3.3	9.1	1.6
합계	79.6	98.5	101.3	20.7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재현,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분양가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249,532,822	건축비	건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35,542,169	건축비	기계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1,429,688
	기간이자	36,654,326			용접공사				난방설비공사	1,396,599
	필요적 경비	12,341,984			조적공사	1,403,401			가스설비공사	1,042,279
	그 밖의 비용	15,387,164			미장공사	2,987,541			자동제어설비공사	1,396,598

- 55 -

건축비	토목	토공사	3,150,834		단열공사	1,307,714	그밖의 공종	특수설비공사	861,672	
		흙막이공사비	-		방수·방습공사	3,370,287		공조설비공사	563,882	
		비탈면보호공사	-		목공사	3,795,560		전기설비공사	11,852,044	
		옹벽공사	-		가구공사	6,825,628		정보통신공사	2,544,076	
		석축공사	-		금속공사	1,722,355		소방설비공사	5,133,855	
		우수·오수공사	990,988		지붕 및 흙통공사	1,318,345		승강기공사	1,948,070	
		공동구 공사	-		창호공사	6,230,245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6,855,295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482,790		유리공사	3,955,036			이윤	8,927,507
		도로포장공사	1,118,038		타일공사	3,487,236		간접비	설계비	1,726,000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228,690		돌공사	3,115,122			감리비	4,179,038
		정화조시설공사	-		도장공사	1,626,668			일반분양시설 경비	10,763,942
		조경공사	2,083,617		도배공사	2,530,372			분담금 및 부담금	8,183,299
		부대시설공사	1,829,516		수장공사	4,869,372			보상비	-
		공통가설공사	3,955,037		주방용구공사	5,507,281			기타 사업비성경비	87,340,735
	가시설물공사	2,477,214	그 밖의 건축공사	1,881,831	그 밖의 비용	54,774,396				
	건축	지정 및 기초공사	8,409,769	기계 설비	급수설비공사	2,376,837	합계	646,185,900		
		철골공사	-		급탕설비공사	1,879,136				
					오배수설비공사	892,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이하로 책정된 분양 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택지비 가산항목	택지비 가산항목 계	64,383,559,664	건축비 가산항목	건축비 가산항목 계	54,783,563,144
				구조형식에따른 가산비	10,567,418,914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1,514,086,748
	인텔리전트 설비 공사비	홈네트워크		9,351,054,500	
		초고속통신특등급		2,133,590,800	
법정 택지이자	36,654,326,128	제세공과금	12,341,984,099	에어컨냉매배관	6,609,341,520
				기계환기설비	3,808,907,960

	말뚝박기 공사비	7,067,020,560		공동주택성능등급		6,340,451,348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4,821,192,929		후분양 기간이자		6,286,566,51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3,601,439,098
	지역난방부담금	1,180,107,737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617,201,320
				법령 개정에 따른 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기	205,197,3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48,927,270		사업승인조건	외관특화공사비	2,087,921,400
택지비 면적정산 비용	270,000,941	법정초과 조경시설설치비	1,064,693,490			
			분양보증수수료		595,692,233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출근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산출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별도)

구분	주택건설공사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상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주)태양유니스	(주)티엘이엔지
금액	2,620,632,000	648,493,727	430,0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4522025-101-0000100 호	₩ 516,948,72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대표사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상호	의왕고천피에프브이(주)	(주)대진주택건설	(주)산하이앤씨	(주)제일에이치디에스	제일건설(주)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29, 상가동 1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12-3, 3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10층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59, 10층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법인등록번호	120111-1108671	110111-7029013	110111-5680502	200111-0379672	135811-0093658

■ 분양관련 문의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견본주택 약도	분양 안내
<p>학의J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백운호수, LOTTE PREMIUM OUTLETS, 백운호수 초등학교, 의왕바라산 자연휴양림, 백운밸리, 레이크포레 4단지,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견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892번지 ■ 사업지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공공주택지구 B-2블록 ■ 홈페이지 : https://www.gc-jeil.co.kr ■ 분양문의 : 1533-3789 <p>※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p> <p>※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본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계약서에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지침 등과 상이한 경우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르기로 합니다.</p>